수 원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11고정2140 과실치상

피 고 인 박尺尺 (49년생, 남), 무직

주거 서울 서초구

등록기준지 전남

검 사 이승훈

변 호 인 변호사 윤 † †(국선)

판 결 선 고 2011. 10. 27.

주 문

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공소사실의 요지

피고인은 2011. 4. 16. 13:15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건물 앞 인도에서 일행과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. 이러한 경우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으로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뱃불에 닿아 화상을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서 담배에

불을 붙여 피우면서 왼손에 담뱃불을 들고 서 있은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 자 신卷��(5세, 여)의 이마에 담뱃불이 닿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.

2. 판단

가. 결론 : 공소기각

나. 이유 : 형법 제266조 제2항, 제1항,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(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1. 10. 25. 처벌의사철회)